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4. 8 선고 2020가단1053 판결 [사해행위취소등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1. 11. 24 선고 2021나309888 판결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4. 8 선고 2020가단1053 판결

전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배동천

변론 종결 2021. 3. 18

판결 선고 2021. 4. 8

주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 취지

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한다)에 관하여

2017. 3. 31. 체결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122,869,29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주식회사 C에 유류를 공급하였고, 2017. 3. 31.자 기준 미지급 유류대금은 122,869,000원이었다.

주식회사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바, 피고와 주식 회사 C 사이에 체결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

그런데 그 후 피고는 C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으로 2억 원, 위약금으로 2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지급받고,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줌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친다(대법원 1996. 11. 15. 선고 96다31406판결, 대법원 2001. 1. 16. 선고 2000다41349판결, 대법원 2003. 4. 8. 선고 2002다70181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,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동일한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내세워 피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7492호로 사해행위취소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, 위 법원은 2018. 11. 27. '피고와 C 사이에 체결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인

주식회사 C에게 복귀되었으므로,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.

'는 등의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,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18나1128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. 8. 21.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따라서 위 확정판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소송요건의 흠결, 즉 '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.

'는 점에 관한 기판력은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, 결국 이 사건 소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(또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취소를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므로,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가액배상만 별도로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).

2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.

판사 손원락

별지